◎ 특허청공고 제1993-10호

특허법시행령·부정경쟁방지법시행령·특허법시행규칙·상표법시행규칙 및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에 관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중개정(안) 입법예고

특허법시행령·부정경쟁방지법시행령·특허법시행규칙·상표법시행규칙 및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표와수수료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 및 주요골자를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3년 10월 21일
특 허 청 장

1. 특허법시행령개정령(안)

가. 개정이유

특허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우선심사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방상 비밀로 취급되는 출원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시행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우선심사대상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출원을 제외함으로써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우선심사청구기간을 출원공개후로 한정함으로서 부실권리의 등록을 방지함.

(2) 우선심사신청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서제출을 폐지함으로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3) 특허출원이 국방상 필요에 따라 비밀로 취급되는 경우에 특허출원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현행 특허등록된 것에 한하던 것을 특허출원에 대한 것까지로 확대하여 출원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함.

(4)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대상서류를 명확히함으로써 특허출원번호통지, 심판번호통지등 경미한 서류의 발송방법은 보통우편으로 하도록 하여 국가예산을 절약토록 함.

(5) 일반인들이 기술정보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내용의 요약서를 공개용특허공보의 게재대상으로 추가됨.

2. 부정경쟁방지법시행령 중개정령 (안)

가. 개정이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부정경쟁심의위원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토록 하고, 위조상품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절차를 정하여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시정권고 조치후의 이행확인 등 후속조치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1)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부정경쟁심의위원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위조상품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시 조치해야 할 절차를 정함.

(3) 시정권고 조치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관한 절차를 정함.

(4)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의 지도·감독을 통한 일관성 및 균형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위임에 따른 지도·감독권한이 있음을 명시함.

3.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 개정이유

특허법 및 특허협력조약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특허출원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이미 특허청에 제출된 증명서류를 원용하는 경우 그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분할출원·변경출원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출원인등의 편의를 도모함.

(2) 특허에 관한 각종 절차를 밟을때 제출 또는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나 기재사항중 출원과 동시에 청구하는 심사청구서등과 같이 별도 제출이 없어도 가능하거나 기타 생략이 가능한 기재사항은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서류의 간소화를 도모함.

(3) 취하된 심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그 사건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던 것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

(4) 국제출원에 있어서 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전에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국제료 및 조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의 개정(1992. 7. 1)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

4. 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 개정이유

상표법 개정에 따라 그 관련법 조문을 정비하고, 상표등록출원서의 첨부서류 및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심사촉진과 상표 전산화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상표자료 전산화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상표의 이미징 입력을 위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상

표견본이 부착된 전산입력용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2)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인이 취소심결이 확정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할 경우 그 심판청구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시에 사용설명서 및 사용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4) 상표권의 이전공고의 매체로서 일간신문이외에 상표공보를 추가함.

5.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중 개정령(안)

가. 개정이유

의장법·상표법 및 특허협력조약규칙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수수료의 신설·폐지·인하등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의장법의 개정에 의해 의장권의 존속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등록표를 새로이 정함.

(2)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수수료를 외국의 입법례등을 고려하여 특허출원의 수수료와 별도로 규정하고 금액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유예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동 기간내에의 갱신등록출원의 수수료를 별도로 규정함.

(4) 출원포대의 복사신청료를 매 1면당 2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 조정함.

(5) 공보 또는 도서등의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료를 받지 않도록 함.

(6) 특허협력조약규칙의 개정에 따라 확인료 및 가산료를 신설함.

6. 의견제출

위 5개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법무담당관, 567-99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

案 發明特許資料 판매센터 內

本會는 發明特許 관계 資料 판매센터를 서울시 江南區 三成洞 韓國綜合展示場(KOEX)別館 2층 發明奬勵館內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活用바랍니다.

문의전화 : (서울)551-5571~2